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도시 지역 등 유희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충북형 도시근로자 등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안 제3조)
-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참여시간 및 선정 (안 제4조~안 제5조)
- 충북형 도시근로자 인력지원 대상 (안 제6조)
- 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7조)
- 참여자 및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안 제8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안 제9조)
- 사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안 제10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제조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않는 유휴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충청북도 제조업체 수 및 생산인력 부족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9,546	10,030	10,413	10,431	10,489
부족인원	4,643	4,611	3,806	4,363	6,939

* 제조업체 총합, 고용부 5인이상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

- 일자리와 인력은 있으나 생산 인력은 부족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2022년부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후 2023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일정 부분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음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11월 기준)
계(A+B)		11개사	77개사	591개사
참여자	순인원	51명	279명	1,819명
	연인원	804명	11,664명	102,366명
기업(A)		11개사	77개사	156개사
참여자	순인원	51명	279명	509명
	연인원	804명	11,664명	46,944명
소상공인^{9,11}(B)		-	-	435개사
참여자	순인원	-	-	1,310명
	연인원	-	-	55,422명

-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유휴인력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사업의 활성화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로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도시 지역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조례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함
- 안 제3조는 도시 지역 유휴인력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참여자 모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해당 지원사업과 조례 운용의 시행을 담보함
-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해당 지원사업 참여자의 기본 근로활동

시간과 근로활동 시간 연장, 참여자의 선정에 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어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중복형 도시근로자 인력지원 대상 기업 등의 자격과 조건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최저시급 이상 및 사회보험 가입,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 함
- 안 제8조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기업 등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와 교통비, 교육수당 등을 시장·군수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기업 등과 참여자로부터 지원금의 회수,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 운영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
-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시업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의 근거를 규정함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p> <p>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p> <p>10. ~ 11. 생략</p> <p>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고 규정한 후 제2항 4호 더목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을 자치단체사무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고용정책 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항과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 확보 등 도시 지역의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전부터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시 등의 유희인력을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인력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 기업 등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 등의 유휴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으로 고용창출, 실업률 제고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